

■ 법률 칼럼

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적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정적임금을 책정합니다. 이 때 결정된 정적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 (Ability to Pay) 이 노동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인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

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쟁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 UC Irvine
LA 척추신경외과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마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기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굽거나 뻐근한 통증/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殃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요통/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Tennis Elbow / 손목/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발목통증/변증상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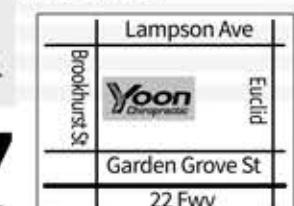
이효섭 장의사, 사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8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 장례 칼럼

Henry 장례 준비서 4. 관, 걸관과 묘지 종류

■ 관

나무관(Wood Casket)과 금속관(Metal Casket)으로 나눈다.

나무관은 나무의 재질과 모양과 제작 과정으로 가격이 정해진다. 가정에 있는 가구와 같다. 남북전쟁 당시 가구제작자들이 관을 만들어 공급하였다.

금속관은 아주 비싼 가격의 구리관, 청동관이 있으나 보통 철판으로 만든다. 철판의 뚜껑이 중요하며 마무리 과정의 손질이 가격을 결정한다. 18 gage 란 1인치 철판을 18장으로 나누고 20 gage란 1인치 철판을 20장으로 만들었다. 18 gage 철판은 20 gage보다 뚜껑과 비싸다.

■ 걸관

걸관(Grave Liner)은 주로 콘크리트로 만들지만 요즈음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한다. 가장 기초적인 걸관에서 상품화한 고가의 걸관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미국의 장례법에 걸관이 꼭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묘지는 걸관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묘지가 꺼지는 것을 방지하고 묘지 관리를 위해서이다.

유골을 매장한다면 유골함을 넣을 유골함 걸관도 공원묘지는 요구한다.

■ 묘지 종류(소유주)

묘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묘지, 땅의 소유권(Ownership)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정된 땅에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권리 (Interment Right)를 구입하는 것이다. 한 기에 한 사람 묻는 묘지(Gravel) 혹은 2사람 합장을 허락하는 구역도 있다. 묘지 가격에는 대부분 관리비(Endowment Fund)가 포함되어 있다.

■ 소유주에 따른 공공묘지 구분

1. Dignity Memorial: 미국 최대의 장례회사이다. 전국에 약 1900 개의 공원묘지와 장례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상장 기

업이다. LA에서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RoseHills Memorial Park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장례 경비를 주도하고 있다.

2. Catholic Church: 천주교에서 소유하고 관리한다. 수년 전까지 천주교인들에게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종교에 무관하게 분양한다. 가격은 저렴하고 관리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

3. County 혹은 Township: County 혹은 Township에서 운영하는 묘지인데 동포사회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가장 저렴하다.

4. 국립묘지(National Cemetery): 국가 유공자들과 군복무를 한 장병들의 안식처이다.

5. 단체 혹은 개인: 개인 소유의 묘지이기에 규제가 적고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가격도 좋다. 도시에서는 시신을 꼭 공원묘지나 허가 받은 공공묘지에 묻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시골에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땅에 본인과 가족 묻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다.

6. 친환경적 공공묘지(Natural Burial Cemetery): 친환경적 묘지는 화학액을 투입하며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신을 삼베와 같은 잘 썩어질 천에 싸서 걸관 없이 매장하거나 소나무관과 같은 자연나무관에 넣어 매장하는 묘지이다.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서 행하여 온 전통 매장과 같다. 최근 미국에서 이 친환경 매장과 예식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각 주마다 큰 도시 가까이 있다.

* Cemetery란 말의 어원은 잡자는 곳이다. 결국 Cemetery는 Hotel과 같다.